

[국세기본법]

1. 기한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 연장(기본법 §48②2호)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한 후 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신고 : 50% - <신 설>	- (좌 동) - 1개월~6개월 이내 : 20% (단, 세무공무원이 조사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신고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해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1.1. 이후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정청구기간의 명확화(기본법 §45의2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기간 ○ 경정이 없는 경우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 경정이 있는 경우 - 최초신고·수정신고분 : 경정 후 90일 이내	○ (좌 동) ○ 경정청구기간 개선 - 최초신고·수정신고분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개정이유>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명확화

<적용시기> 2011.1.1.부터 적용

3. 양도세,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 신설(기본법 §47의 2,3)

종 전	개 정
<p>< 신 설 ></p>	<p><input type="checkbox"/>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 신설</p> <p>○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결정·경정시 추가 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는 경우</p>

<개정이유> 세액공제·감면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에 소극적인 일반 개인 납세자들의 관행을 고려

<적용시기> 2011.1.1.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기본법 §49①)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p> <p>○ 1억원의 가산세 한도 적용</p>	<p>○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으로 가산세 상한 인하</p>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해 단순 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1.1 이후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범위 조정(기본법 §35)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선집행 지방세·공과금</p> <p>○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국세에 우선</p>	<p>○ 체납처분비가 우선</p>

<개정이유> 공과금보다도 총당순서가 뒤쳐진 공과금의 가산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만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 징수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2011.1.1 이후 분부터 적용

6. 조세 불복절차에서 배우자 등에 대해 불복대리권 인정(기본법 §59)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조세 불복절차의 대리인 자격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대리인 범위 확대 ○ (좌 동) ○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개정이유> 조세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에서의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적용시기> 2011.1.1부터 적용

7. 심판답변서 제출기한 연장(기본법 §69③)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심판답변서 제출기한 ○ 세무서장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 10일 이내로 연장

<개정이유> 최근 국제거래·금융거래와 같은 쟁점이 복잡·다양한 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

<적용시기> 2011.1.1 이후 심판청구 제기분부터 적용

8. 조세심판관 제척·회피·기피사유의 명확화 및 심판조사관에 대해서도 제척·회피·기피제도 도입 (기본법 §69③)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조세심판관 제척 등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친족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사용자 ○ 기타 그 업무에 관여한 자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input type="checkbox"/> 제척 등 사유의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사용인이었거나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우 ○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당초 처분(조사, 처분, 불복 과정) 등에 관련된 자 <input type="checkbox"/> 심판조사관에 대하여도 상기 제척·회피·기피규정 적용

<개정이유>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하여 제척·회피·기피사유의 명확화 및 적용대상자 확대

<적용시기> 2011.1.1 이후 심판청구 제기분부터 적용

9.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기본법 §26의 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세부과 제척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세목 : 10년 - 상속세·증여세 : 15년 	<input type="checkbox"/>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본 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제척기간 10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제5항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개정이유> 조세포탈에 의한 가산세 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011.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국세환급금총당의 소급효 신설(기본법 §51)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금결정시 다음의 금액은 총당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 납세고지된 국세(총당동의시) ○ 자진납부하는 국세(총당동의시) <input type="checkbox"/> 체납세금 총당시 총당의 소급효 없음	<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총당(상계) 결정시 소급효 규정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

<개정이유>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총당(상계)하지 못해 세수를 일실하는 문제점 해소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총당 분부터 적용

11.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에 조세심판원 공무원 추가 (기본령 §9의3③)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법제처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정부위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심판원 3급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개정이유> 국세분야의 정부 법령해석의 전문성·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11.1.1부터 적용

[국세징수법]

1.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제도 일몰연장(징수령 §2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최대 9개월→최대 18개월) *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 : 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② 5년내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납 사실 없을 것 ④ 국세 체납액 500만원 미만 ⑤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 500만원 미만 등 ◦ 일몰기한 : '10.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1.1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참가압류기관 공매 허용(징수법§58)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압류재산 공매권자 : 최초 압류한 기관 ※ 참가압류한 기관은 공매권한이 없고 최초 압류한 기관에게 매각 최고만 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압류재산 공매권자 확대 ① 최초압류한 기관 ② 참가압류한 기관 (단, 최초 압류한 기관이 매각 최고를 받고 3개월 이내 매각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허용)

<개정이유> 공매지체시 발생하는 조세채권징수 지연 및 체납자 납부 가산금 증가문제 해결

<적용시기> 2011.1.1 이후 매각최고 분부터 적용

3. 공매기록 열람·복사 대상 확대(징수법 §8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배분계산서 열람·복사 ○ 이해관계자는 배분계산서 열람·복사 신청 가능	<input type="checkbox"/> 배분계산서 열람·복사 대상 확대 ○ 대상 : 배분계산서, 감정평가서, 배분요구서, 채권신고서

<개정이유> 공매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적용시기> 2011.1.1 이후 분배 분부터 적용

4. 매수대금 납부기한 연장 한도 단축(징수법 §75②)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내 ○ 필요시 그 납부기한 <u>60일 한도로 연장</u>	<input type="checkbox"/> 납부기한 연장 한도 축소 ○ (좌 동) ○ 필요시 그 납부기한 <u>30일 한도로 연장</u>

<개정이유> 매각기간 단축에 따른 체납액 조기 총당으로 체납자 추가 가산금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2011.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대상 추가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에서 제외되나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포함.

<개정이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01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부가령 §26)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일몰 적용 ('11.1.1 ~ '12.12.31)

<개정이유>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부가령 §37)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産學간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창업보육, 인력양성,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위해 대학에 설치된 비영리법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몰기한 : '10.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2011.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4.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부가령 §29)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VAT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input type="checkbox"/> 일부 과세전환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VAT 과세전환 -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맞추어 일부 의료용역을 과세로 전환

* EU-OECD 국가 등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

<적용시기>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5.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령 §29)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VAT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 수의사·동물병원 진료용역	<input type="checkbox"/> 일부 과세전환 ○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VAT 과세전환 - 단,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유지

<개정이유>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과세로 전환

<적용시기>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6.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부가령 §30)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VAT 면제되는 교육용역 ○ 인·허가, 등록 및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input type="checkbox"/> 일부 과세전환 ○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 무도학원(舞蹈學院)

<개정이유> 공익목적의 교육이 아닌 영리학원에 대하여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과세로 전환

○ 1차적으로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을 과세로 전환

* 수강료를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하되, 평생교육 시설·노인복지시설 및 학원법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

<적용시기>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부가규칙 §19)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기준공제율 : 음식업 3/103, 기타 2/102 ○ 음식업 우대공제 (일몰기한 : '10.12.31) 4/104(유흥주점), 6/106(법인), 8/108(개인)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011.1.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부가법 § 32의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 ○ 음식·숙박업영위 간이과세자 : 2% ('10년말까지 2.6%) ○기타 개인사업자 : 1% ('10년말까지 1.3%) ○공제한도 : 500만원('10년말까지 700만원)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음식숙박업 등 중소기업인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금액 : 건당 100원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공제금액 조정 ○ 공제금액 : 건당 200원 ○ (좌 등)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 지원

<적용시기>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부과방법 개선(부가법 §22 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미등록가산세 부과방법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기간) 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부과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세기간) 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부과	<input type="checkbox"/> 부과방법 개선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1% 부과 ○ 사업개시일부터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1% 부과

<개정이유>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기준의 합리화

<적용시기> 2011.1.1 이후 사업자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11.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부가법 §2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 실제 공급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 * 공급가액의 2%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부과사유 추가 ○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부과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및 탈세 방지

<적용시기>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비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수시 가산세 신설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신설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및 탈세 방지

<적용시기>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부가법 §19)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개정이유> 사업 폐업시 일수 계산 잘못 등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20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부가법 §19)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 ○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	<input type="checkbox"/> 신설 ○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단,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적용시기> 20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포기제도 개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제한 사업자단위과세로 포기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가능	<input type="checkbox"/> 포기제도 개선 ○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포기신고 가능 ○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포기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16. 간이과세 적용범위의 축소(부가령 §74)

종 전	개 정
<신 설> *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배제 * 매출액이 농·어업 등은 3억원 이상, 제조업 등은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은 7천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개정이유> 세법지식·기장능력 등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납세협력비용 경감이라는 간이과세 제도의 취지를 감안

<적용시기> 2011.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7. 간이과세 적용기준의 합리화 (부가령 §74)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 : 각 사업장 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판정 <input type="checkbox"/> 이외 업종 : 각 사업장 매출액만으로 판정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이외 업종 : 각 사업장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판정

<개정이유> 업종간 과세유형 판정기준의 형평도모 및 합리화

<적용시기> 2011.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8. 재고매입세액공제와 재고납부세액 대상 개정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대상 <input type="checkbox"/>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input type="checkbox"/>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 자산

<적용시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19.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종 전	개 정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VAT 면제 적용</p> <p>* 목재Pellet : 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알갱이 형태로 분쇄하여 건조·압축한 친환경연료</p> <p>○ 일몰 2년 적용 ('11.1.1 ~ '12.12.31)</p>

<개정이유> 농어촌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자원 재활용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0.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조특령 §105)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p> <p>○ 의수족, 휠체어 등 22종</p>	<p><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p> <p>○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p>

<개정이유>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부담 경감

* 시각장애인의 학습 및 정보 습득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플레이어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1.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소득법 §12)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 포함

<개정이유> 근로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시기>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 원천징수세율 : 8%	<input type="checkbox"/>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 원천징수세율 : 6%

<개정이유>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노조법」에 위반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 및 기타소득으로 과세(법인령 §50①5, 소득법 §21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인이 노조전임자등에 임금 지급시 ○ 인건비로 하여 손비 인정 - (신 설) <input type="checkbox"/> 노조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좌 동) - 「노동조합법」 제24조에 위반하여 지급시 손금 산입 불허 (승) <input type="checkbox"/>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법」 제24조에 위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의 손비 부인 근거 명확화
- 위법하게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기존의 근로소득으로 받던 각종 공제혜택을 배제

<적용시기> (법인세) '1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소득령 §41)

종 전	개 정
<신설>	<input type="checkbox"/> 대학교수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적용시기)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소득법 §51의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 2명 : 5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 한도 : 300만원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한도 : 400만원

<개정이유>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지원

<적용시기> 2011.1.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금액 축소 (소득법 §6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 ○ 초과반환금의 50%+납입연수별 공제금액	<input type="checkbox"/> 공제금액 축소 ○ 초과반환금의 40%+납입연수별 공제금액

<개정이유> 일반 근로자의 퇴직소득과의 과세형평성 고려

<적용시기> 2011.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8.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 과세방법 보완(소득법 §14, §62, §7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 :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 <신 설>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 (좌 동) ○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개정이유>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 소득자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개선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9.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 (소득법 §48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 정률공제 : 퇴직소득금액의 45%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 : 퇴직소득금액의 40%

<개정이유>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

<적용시기> 20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도 개선 (조특법 §18의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 15%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 3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등 합계액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간주임대료 과세 <input type="checkbox"/>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소정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과세

<적용시기> 2011.1.1이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2.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축소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단순경비율 대상자 제외 <input type="checkbox"/> 신규사업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기준에 미달하는 자만 단순경비율대상자로 한정함. 즉,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에서 제외

<적용시기>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3.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소득령 §143)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과세 방법</p> <p>○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는 증빙서류로,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 인정</p> <p>*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p> <p>·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수입금액 6,000만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 건설업 : 수입금액 3,6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p>	<p>○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 인하</p> <p>-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계산</p>

<개정이유>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신고 유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적용시기>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4.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p> <p>○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경감</p>	<p><input type="checkbox"/>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p> <p>○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경감</p>

<적용시기> '2011.1.1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사업장별 구분 경리 개선(소득법 §160)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장별 구분 경리 ○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장별 구분 경리	○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구분 경리

<개정이유> 사업장별 구분 경리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장부에 기록하는 분부터 적용

16. 계산서 관련 가산세 강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계산서관련 가산세 ○ 계산서 가공·위장수수 및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 공급가액 x 1%	○ 계산서 가공·위장수수 및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 공급가액 x 2%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소득법 §97)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양도세 이월과세</p> <p>○ 적용요건</p> <p>-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p> <p>○ 적용방법</p> <p>-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p>	<p>○ 다음의 부득이한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 배제</p> <p>- 증여받은 후 수용되어 2년 이내 양도</p> <p>- 사망으로 배우자관계 소멸</p> <p>○ (좌 동)</p>

<개정이유> 공익사업 수용, 배우자 사망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11.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18. 반기별납부적용 대상 제외 원천징수세액 신설

종 전	개 정
<p><신설></p>	<p><input type="checkbox"/> 반기별납부적용 대상 제외 원천징수세액 신설</p> <p>○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p> <p>○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p> <p>○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p>

19.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법 §97)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p> <p>○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경우</p> <p>▪ 필요경비 = 실지거래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p> <p>○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인 경우</p> <p>* 양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frac{\text{취득 기준시가}}{\text{양도 기준시가}}$</p> <p>▪ 필요경비 = 환산가액 + 개산공제금액*</p> <p>* 부동산 3%, 지상권 등 7%, 그 밖 1%</p>	<p>○ (좌 동)</p> <p>○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p> <p>- 필요경비를 「환산가액+개산공제금액」 대신 「자본적 지출액+양도비」로 계산</p>

<개정이유> 실거래가액 과세원칙을 반영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11.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20.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계상된 감가상각비의 이중 공제 배제(소득법 §97)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추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 여부</p> <p>○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 차감</p> <p>○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 차감하지 않음</p>	<p><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 공제 배제</p> <p>○ (좌 동)</p> <p>○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 차감</p>

<개정이유> 필요경비의 이중 공제 배제로 과세형평 도모

<적용시기>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 연장

종 전	개 정
<p>□ 2009.1.1~2010.12.31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다주택 중과 완화 및 2009.3.16~2010.12.31 양도하거나 취득한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토지 중과 완화</p> <p>○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 * 2년 이상 보유 : 일반세율(6%~35%) *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 40% * 1년 미만 보유 : 50%</p> <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p>	<p>□ 2009.1.1~2012.12.31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다주택 중과 완화 및 2009.3.16 ~ 2010.12.31 양도하거나 취득한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토지 중과 완화</p> <p>○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 * 2년 이상 보유 : 일반세율(6%~35%) *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 40% * 1년 미만 보유 : 50%</p> <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p>

<적용시기> 2011.1.1 이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2.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소득법 §91)

종 전	개 정
<p>□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 미등기 양도자산</p> <p>○<신설></p>	<p>□ 비과세·감면 배제(제한) 대상 추가 ○ 미등기 양도자산</p> <p>○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실거래가액과의 차액만큼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차감</p>

<개정이유>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실거래가 과세 정착

<적용시기> 2011.7.1 이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3. 협의분할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 보완 (소득령 §155)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상속주택이 장기간 협의분할되지 않은 경우 소유주택 판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인의 주택수에서 제외됨	<input type="checkbox"/> 상속주택외의 주택 양도시까지 협의분할되지 않은 아닌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최대지분보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적용

<적용시기> 2011.1.1 이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1. 「노조법」에 위반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 (법인령 §50①5)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인이 노조전임자등에 임금 지급시 ○ 인건비로 하여 손비 인정 - (신 설)	○ (좌 등) - 「노동조합법」 제24조에 위반하여 지급시 손금산 입 불허 (승)

<개정이유>

- **위법하게 지급된 경비의 손비 부인 근거 명확화**
- Time-off제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노조전임자 급여는 위법하게 지급한 경비로서 비용 처리를 불인정

<적용시기> 201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단기금융자산 등의 부대비용 취득가액에서 제외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단기금융자산 등의 부대비용 ○ 금융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 취득가액에서 제외

<개정이유>

-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단기금융자산 등의 취득관련 부대비용에 대해 당
 기 비용으로 처리함으로 기업회계와 조화를 위해 법인세법도 취득가액에서 제외

<적용시기> 국제회계를 적용받는 법인은 2010.12.30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그 밖의 법인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K-IFRS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법인령 §79)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인세법 규정 없는 경우 다음 회계기준 준용 ○ 기업회계기준(K-GAAP)	○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 '11년부터 상장기업에 적용 ** '11년부터 비상장기업에 적용

<개정이유> K-GAAP이 '11년부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외화자산·부채 환산방법 개정(법인령 §7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평가손익 인식대상 외화자산부채 ○ 은행 : 모든 외화자산·부채 (강제사항) ○ 비은행 : 평가손익 인식 불허	○ 은행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강제사항) ○ 비은행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선택사항)

<개정이유> 은행외 기업에 평가손익 불인정시 헷지거래로 실질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 현재는 회계상 헷지대상 자산의 평가손익과 헷지거래 손익이 상쇄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평가손익이 부인되어 거래손익만 인식되므로 세부담이 발생

○ 은행의 경우 K-IFRS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해서만 평가손익 인식 허용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법인법 §28)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 특정차입금만 자본화 강제 * 일반기업회계기준 · (자본화 대상) 특정·일반 차입금 · (강제여부) 선택사항 * K-IFRS · (자본화 대상) 특정·일반 차입금 · (강제여부) 강제사항	<input type="checkbox"/>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 특정차입금 : 자본화 강제 ○ 일반차입금 : 자본화 선택

<개정이유>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전환(법인법 §30)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상위험준비금을 결산상 비용계상한 경우 손금인정(결산조정사항)	<input type="checkbox"/> 비상위험준비금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 (신고조정사항)

<개정이유>K-IFRS도입시 비상위험준비금이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해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대손요건이 완화되는 소액채권의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 11호)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액채권의 대손 처리 ○ 범위 : 10만원 이하* ○ 대손 요건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 -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을 것 *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파산 등 대손 사유가 매우 엄격	<input type="checkbox"/> 소액채권 범위 확대 ○ 기준금액 : 20만원 이하 ○ 대손 요건 - (좌 동) - (삭 제)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법인령 §31⑥4)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즉시상각 대상 재산 ○ 소액자산 : 개당 100만원 이하로서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닌 자산 ○ 기타자산 - 영화필름, 어구, 공구, 가구, 가정용기구, 시계, 시험기기, 전기기구, 가스기기 등	<input type="checkbox"/> 즉시상각 대상 재산 추가 ○ (좌 동) ○ 기타자산 -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추가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법인법 §28, 법인령 §60②)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 적립액 손금산입 한도 퇴직급여총당금(사내유보)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 한도 조정 퇴직급여총당금(사내유보) -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 ('16년 폐지)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 <tr> <td>'10</td> <td>'11</td> <td>'12</td> <td>'13</td> <td>'14</td> <td>'15</td> <td>'16</td> </tr> <tr> <td>30%</td> <td>25%</td> <td>20%</td> <td>15%</td> <td>10%</td> <td>5%</td> <td>0%</td> </tr> </table> * 단, 既 손금인정된 총당금은 총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 (경과조치)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개정이유> 사내유보에 대한 손금한도를 축소·폐지하여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0.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조특법 §73, 법인법 §24②)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구분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0%(개인 100%) 한도 손비 인정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한도 손비 인정 * 대학교 시설비등 기부금은 '10년말 일몰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5%한도 손비 인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 (좌 동) ○ (폐 지) ○ (좌 동)

<개정이유> 기부금 구분 체계 간소화

<적용시기>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11. 기부금 구분 공익성기준 명확화(법인법 §24②)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득금액의 50%한도 (법정기부금 또는 특례 기부금) 기부금 <input type="checkbox"/> 법정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 공공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EBS,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민신탁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input type="checkbox"/> 소득금액의 50%한도 (법정기부금) 기부금 <input type="checkbox"/>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input type="checkbox"/>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input type="checkbox"/> 공공 교육·의료기관(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한정) <input type="checkbox"/> 전문모금기관* : 기부금 모집·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法)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수입 상당부분이 기부금·정부지원금인 법인·단체

<개정이유> 기부금을 구분하는 공익성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12.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법인법 §24)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 기부시 손금산입 한도 * 학술·종교·복지·문화예술단체 등 일반적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input type="checkbox"/> (법인) 소득금액의 5% 內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 <input type="checkbox"/> (법인) 소득금액의 10% 內

<개정이유>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부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20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13.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법인령 §68)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장기할부거래 수익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 인도기준 또는 회수기준 적용 * K-GAAP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해 인도 기준·회수기준을 모두 허용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FRS는 예외 없이 인도기준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 허용

<개정이유>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 단기 건설계약 인도기준 신고조정 허용(법인령 §69)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계약 수익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 진행기준 또는 인도기준 적용 * K-GAAP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해 진행기준·인도기준을 모두 허용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FRS는 예외없이 진행기준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중소기업은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허용

<개정이유>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K-IFRS 도입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법인법 §2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경우 <input type="checkbox"/> 결산상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 (결산조정사항)	<input type="checkbox"/> 결산조정 원칙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신고조정 허용 ○ 대상 - 유형자산 -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 추가비용 없이 갱신 가능한 상표권 등 ○ 신고조정시 한도 - '13년 이전 취득자산 : K-IFRS 도입이전 결산상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 '14년 이후 취득자산 : 세법상 기준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 현행 회계상 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차이가 큰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조정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법인영 §27, 29)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사유 ○ 합병·사업인수·외국인투자·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input type="checkbox"/> 신고 내용연수 변경사유 ○ 자산의 훼손·가동을 증가·신기술 보급·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 신고 허용	<input type="checkbox"/> 변경사유 추가 ○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 <input type="checkbox"/> 변경사유 추가 ○ K-IFRS 최초 도입하여 결산상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일부기업의 감가상각방법이 변경(정률→정액)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K-IFRS와 법인세

K-GAAP	K-IFRS	현행 세법	2011법인세
<p><상환우선주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적으로 자본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으로 분류 	현행 유지
<p><예약매출 수익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진행률에 따라 수익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시점에 수익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진행률에 따라 수익인식 	현행 유지
<p><총당부채 인식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당부채 원칙적으로 불인정 	현행 유지
<p><생물자산 가치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현행 유지

17. 채무재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 측정방법 규정(법인령 §19의2)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채무재조정시 세무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GAAP 방식*으로 채권을 현재가치할인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산입 * 채권발행시 이자율로 할인 * K-IFRS에서는 채무재조정시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 이자율을 법인세법에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발행시 이자율로 할인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방식과 동일)

<개정이유> 할인 방법을 법인세법에 규정하여 상장·비상장 기업간 세부담 불형평 방지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8. K-IFRS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 명확화(법인법 §60)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신고시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 이하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법인의 재무제표 ○ (좌 등) <input type="checkbox"/> K-IFRS 기업은 과세표준 신고시 표준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p style="text-align: center;">*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식으로 규정</p>

<개정이유> K-IFRS에서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시 개별재무제표 제출의무 명시

- K-IFRS의 재무제표 항목분류가 간소화된 점을 감안, K-IFRS 도입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9. 금전 대여의 경우 시가 산정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여의 경우 시가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구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3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개정

<적용시기>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산정시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 상속세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때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주식 모두 할증평가 적용	○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중소기업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기>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1.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도 도입 (법인법 §53의 2)

종 전	개 정
< 신설 >	<input type="checkbox"/>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도 도입 ○ 다음 중 방법 중 선택가능 ①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②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③ 재무상대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해당 거래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적용시기>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법인법 §53의 3)

종 전	개 정
<p>< 신설 ></p>	<p><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도 도입</p> <p>○ 다음 중 방법 중 선택가능</p> <p>①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p> <p>②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p> <p>③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해당 거래일 현재의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p>

<적용시기>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보완 (법인법 §84의 1~84의 3)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청산소득 신고납부기한</p> <p>○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p>	<p>○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p>

<적용시기> 2011.1.1이후 최초로 해산등기 하는 분부터 적용

24. 국내에 진출한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구체화(법인법 §1 3호, 법인령 §1의2)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국외 공동사업체 과세 방법</p> <p>○ 외국법인 : 법인세 과세</p> <p>○ 기타 외국단체 : 소득세 과세</p> <p>*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p> <p>**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p>	<p><input type="checkbox"/> 과세 방법 명확화·구체화</p> <p>○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국내 사업체와 사법적 성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외국법인으로 분류하여 과세</p> <p>* ①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②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③ 유한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자신의 소유권 및 거래의 법적 효과가 사업체 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등</p> <p>○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외국단체로 분류하여 과세</p> <p>※ 주요 국외사업체 유형에 대해 위 ①②③의 기준을 적용한 분류 결과를 목록으로 고시하기 위한 절차 등 마련</p>

<개정이유>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히 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5. 성실납세제도 폐지 (소득법 §87의2~87의7, 법인법 §76의2 ~ 76의7)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성실납세제도</p> <p>○ 사업자의 세무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신고 방법을 표준화·간소화</p> <p>○ 적용대상 사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 1.5 ~ 6억원 이하 - ERP, POS 등 도입 및 복식부기기장 	<p><input type="checkbox"/> 폐 지</p>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의 정비

<적용시기>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상속세법]

1. 보안시설비에 자연장비 사용비용 포함 (상증령 9의 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보안시설에 사용된 비용 ○ 5백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 장례비용으로 공제	○ 자연장에 사용된 비용도 보안시설비에 포함하여 5백만원까지 장례비공제 적용

<적용시기> 2011.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장애인 공제 개선 (상증법 20의 1)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공제 ○ 장애인 1명당 500만원에 75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공제	○ 장애인 1명당 500만원에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적용시기> 2011.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동거주택상속공제 개선 (상증법 23의 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요건 * 주택가액의 40%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5억원 한도)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 ○ 1세대가 동거주택 하나만 소유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요건 합리화 ○ 1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 (이사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도 요건 포함 - 이사·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2주택, 귀농주택·문화재주택 소유 등

<개정이유> 동거봉양 유도를 위해 공제요건 완화

<적용시기>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4. 가업상속공제 개선 (상증법 18, 상증령 15)

종 전	개 정
<p>□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p> <p>○ 가업상속공제의 내용 - 가업상속시 상속재산의 40%를 사업기간에 따라 60억 ~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p> <p>○ 대상 및 적용요건</p> <p>① 가업상속 대상 - 중소기업: 매출액 1천억원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추 가></p> <p>② 최대주주* 지분율 - 상장기업 : 40% 이상 - 비상장기업 : 50% 이상</p> <p>* 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p> <p>③ 피상속인 : 최대주주</p>	<p>○ (좌 동)</p> <p>○ 대상 확대 및 적용요건 보완</p> <p>① 가업상속대상 확대 - (좌 동) - 고용요건 충족한 매출액 2천억원 이하 기업 ·고용요건 : 상속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년도 1.2배 이상(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p> <p>②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 완화 - 상장기업 : 30% 이상 - (좌 동)</p> <p>③ 피상속인 제한 : 최대주주 중 1인</p>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5.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도입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input type="checkbox"/>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	<input type="checkbox"/>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상증법 §16)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 <input type="checkbox"/>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 없는 일반기업 주식을 성실공익법인에 출연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성실공익법인(특수관계 여부 불문)에 출연하고, 10% 초과분은 3년이내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설립한 공익법인은 제외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활성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7.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상증법 §78, 국기법 §49①)

종 전	개 정
<p>□ 상증법상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누락에 대한 가산세</p> <p>* 전환사채 발행내역, 생명보험·퇴직금 지급액 명세 등</p> <p>○ 가산세율 : 미제출·누락금액의 2%</p> <p>○ 가산세 한도 : 미적용</p>	<p>○ 가산세율 : 미제출·누락금액의 0.2%</p> <p>○ 가산세 한도 1억원(중소기업 5천만원) 적용</p>

<개정이유> 상속·증여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 납세자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결정·경정 분부부터 적용

8. 상속·증여재산 평가 관련 유사매매사례가액제도 개선 (상증령 §49)

종 전	개 정
<p>□ 상증법상 재산평가 방법</p> <p>○ (원칙) 상속·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p> <p>*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p> <p>○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등도 시가로 인정</p> <p>-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 : 3개월)이내의 가액</p> <p>○ (예외)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경우 시가 인정</p>	<p>○ (좌 동)</p> <p>○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을 때에만 적용</p> <p>- (1순위)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등 * 매매·수용·경매·공매가격 등</p> <p>- (2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다만, 상속·증여개시일전 6개월(증여: 3개월)부터 <u>상속·증여세 신고시</u>까지의 가액 인정</p> <p>- (3순위) 당해 재산의 공시가격</p> <p>○ (좌 동)</p>

<개정이유> 상속·증여 재산평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1.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조특법§26)

종 전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율 : 7% ○ 투자대상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적용대상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 ○ 적용대상업종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32개 업종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 * 청년(15세 ~ 29세) 고용의 경우에는 1인당 1,500만원 -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 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하여 공제 가능 ○ 일몰기한 : '12.12.31

<개정이유>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투제도를 폐지하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투자세액공제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2. 지역특구·외투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조특법 §121의17·12의2·121의20·121의21·121의8~9, §121의2)

종 전	개 정
<p>□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p> <p>* 기업도시, 대덕특구 등</p> <p>○ 적용대상 : 지역특구내 창업·사업장 신설기업 또는 입주기업</p> <p>○ 감면내용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p> <p>□ 외투기업 세제지원제도</p> <p>○ 적용대상 : 단지형 외투지역·경자구역 등의 중규모 외투기업, 개별형 외투지역·경자구역 등의 대규모 외투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외투기업 등</p> <p>○ 감면내용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p> <p>- (단지형 등 중규모 외투기업) 3년간 100%, 2년간 50%</p> <p>- (개별형 등 대규모 외투기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5년간 100%, 2년간 50%</p>	<p>□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p> <p>○ 지원한도 신설</p> <p>- 지역특구내 기업·외투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 설정 : 투자금액의 50%* 이내</p> <p>* 외투기업 중 감면기간 7년은 70%</p> <p>○ 고용인센티브 신설</p> <p>- 고용증대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세제지원 : 투자금액의 20% 이내</p> <p>*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씩 추가지원</p>

<개정이유>

① (지원한도)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사례 방지

※ EU의 경우 투자금액 대비 10~50%정도 인센티브(현금·세제지원) 상한 설정

② (고용인센티브) 지역특구내 기업 및 외투기업의 고용증대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입주기업부터 적용

(단, 외투기업은 '11.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소기업 규모 판단기준 합리화(조특령 §6⑤)

종 전	개 정
<p>□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5 ~ 30%) 적용시 우대되는 소기업 규모 판단시</p> <p>○ 업종별 인원기준* 및 매출액(100억원 미만, 공통요건) 기준 동시 적용</p> <p>* (제조업) 100명,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 50명, (기타) 10명</p>	<p>○ 업종별 인원기준을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만 적용</p> <p>* 세부검토를 거쳐 내년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p>

<개정이유> 인원기준이 고용증대를 저해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 인원수 계산방법 변경 (조특규칙 §2②)

종 전	개 정
<p>□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 인원기준*을 적용하는 경우</p> <p>○ 파트타임 근로자(週 15~40시간)도 1인으로 계산</p> <p>* (제조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p>	<p>○ 파트타임 근로자 1인을 0.5인으로 계산</p>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

※ 既시행중인 제도 :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적용에 있어 파트타임 근로자 채용 시 증가인원 1인당(0.5인으로 계산) 150만원 세액공제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등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업종에 추가(조특법 §7·§6)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대상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출판업, R&D업 등 34개 업종 ○ (감면율) 5~30% 세액감면 <input type="checkbox"/>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업종) 제조업, 출판업, R&D업 등 22개 업종 ○ (감면율) 50% 세액감면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개정이유> 취약계층의 고용증대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임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11.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6.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외투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대상업종 : 모든 업종 ○ 지원요건 ①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 폐쇄 ②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수도권밖에 신설 등 ○ 일몰기한 : '12.12.31

<개정이유> 해외고용이 국내고용으로 전환되도록 유도

<적용시기> '11.1.1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

7.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조특법 §112, §121의14, §121의18)

종 전	개 정
<p>□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대상</p> <p>○ 지방 및 제주도 소재 골프장</p> <p>- 일몰기한 : '10.12.31</p> <p>○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p> <p>- 일몰기한 : '10.12.31</p>	<p>- 일몰기한 2년 연장('12.12.31)하되, 감면을 차등적용(수도권 연접 사군 50%, 그 외 100% 감면)</p> <p>- 일몰연장 : '12.12.31</p>

<개정이유>

- 지방 및 제주도 소재 골프장의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일몰연장
 - 다만, 문턱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감면을 차등 적용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기업도시가 건설중*에 있는 점을 감안, 추후 일몰종료 여부 판단

* 태안은 '07.10월 착공, 무주 및 영암·해남은 개발계획 수립 중

<적용시기> '11.1.1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8.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조특법 §85의6)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 ·요건 : ①장애인수 10인 이상, ②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50%이상 중증 장애인) 고용, ③장애인 편의시설 완비, ④최저임금 이상 지급

<개정이유>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1년 이전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정을 받은 경우 '11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9.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조특법 §13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최저한세율이 7%이나, * 요건 : 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이상 또는 취약계층 서비스수혜자 비중이 30%이상인 기업 등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표구간별 최저한세율* 적용 * 과표 100억 이하 : 10% 과표 100~1000억 : 11% 과표 1,000억 초과 : 14%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7%)의 최저한세율 적용 ※ 사회적기업의 영위 업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7% 적용

<개정이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0.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일몰연장(조특법 §85의6)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에 대한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 세액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 : '10.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일몰연장(조특법 §69)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고령(65~70세)인 은퇴 농업인에 대해 75세까지 지급 ○ 일몰기한 : '10.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2.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조특령 §66⑪·⑫)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신 설>	<input type="checkbox"/>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 (좌 동) -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개정이유>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3.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제도 일몰연장(조특법 §99의5)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09.12.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수입 2억원 미만 - 2010년 중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대상세액) '09.12.31 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 (신청기간) '11.12.31 ○ (소멸한도) 1인당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2.31 이전 폐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10.1.1~'12.12.31 기간중 사업재개 - '11.12.31 이전 결손액 ○ 신청기한 : '13.12.31 ○ (좌 동)

<개정이유> 국세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납부의무 소멸신청분부터 적용

14. 상생보증펀드 출연금 세액공제 제도 신설(조특법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된 「상생보증펀드*」(산기보)에 출연한 경우, 동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부품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09년도 조성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15.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일몰연장(조특법§8의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대기 업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하여 <input type="checkbox"/> 상생협력 중소기업에게서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세 면 제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 '10.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

16.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7의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input type="checkbox"/> 개요 : 내국인*이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중 지급기한이 60일 이 내인 환어음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정비율** 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대기업의 경우 네트워크론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대금을 지급 ** 지급기한 30일 이내 : 0.5%(대기업0.4%), 지급기한 30일 ~ 60일 : 0.15%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 소득세법인세의 10%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 '10.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납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일몰연장

<적용시기> '11.1.1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17.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30의5)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지원요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것 - (창업자금 규모)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 한도 ○ (특례내용) 5억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 일몰기한 : '10.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적용시기> '1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8.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30의6)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의 거주자 -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음 ○ 특례내용 - 5억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 일몰기한 : '10.12.31	○ 수증자요건 명확화 - 18세 이상의 거주자 1명 ○ (좌 동)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9.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일몰연장(조특법 §101)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 ○ 일몰기한 : '10.12.31 ※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주식평가액에 일정을 가산하여 할증 <div style="text-align: center;"><할증율></div>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th> <th style="text-align: center;">중소기업</th> <th style="text-align: center;">대기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분율 5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분율 50%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body> </table>		중소기업	대기업	지분율 50% 이하	10%	20%	지분율 50% 초과	15%	30%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3.12.31
	중소기업	대기업								
지분율 50% 이하	10%	20%								
지분율 50% 초과	15%	30%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20.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조특법 §10①3호)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 25% ○ 일반기업 : 3~6%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일반 R&D세액공제율 단계적 축소 ○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3년간(5~7년차) 15%, 2년간(8~9년차) 10% ○ 일몰기한 : '12.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1.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조특령 §6)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7%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 10~14% ○ 최저한세율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3년간(5~7년차) 8%, 2년간(8~9년차) 9% ○ 일몰기한 : '12.12.31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중소기업</td> <td>7 %</td> </tr> <tr> <td rowspan="3">일반 기업</td> <td>과표 100억원 이하</td> <td>10 %</td> </tr> <tr> <td>과표 1천억원 이하</td> <td>11 %</td> </tr> <tr> <td>과표 1천억원 초과</td> <td>14 %</td> </tr> </tbody> </table>		구 분		세 율	중소기업		7 %	일반 기업	과표 100억원 이하	10 %	과표 1천억원 이하	11 %	과표 1천억원 초과	14 %		
구 분		세 율														
중소기업		7 %														
일반 기업	과표 100억원 이하	10 %														
	과표 1천억원 이하	11 %														
	과표 1천억원 초과	14 %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2.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조특령 §2②)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 ※ 최초 중소기업 졸업 → 중소기업 복귀 → 일반기업이 된 경우 졸업유예를 적용받지 못함		<input type="checkbox"/>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졸업유예기간 4년 및 졸업부담 완화기간(5년)* 동안에는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 ①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②일반R&D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기간 ※ 최초 중소기업 졸업 → 졸업유예기간내 중소기업 복귀 → 졸업유예기간내 일반기업이 된 경우 잔존 졸업유예기간 동안 졸업유예 적용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4년) 및 졸업부담완화기간(5년)* 동안에는 졸업유예 적용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3. 도시지역 편입이후 자경농지 감면대상 확대(조특령 §66④)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8년 자경농지가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양도세 100% 감면 <input type="checkbox"/>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사업지역 안에서의 사업시행 지연 등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양도세 감면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 이내에 군사보호 구역 등 재산권행사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이유> 공익을 위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4.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8)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input type="checkbox"/>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input type="checkbox"/> R&D세제지원 대상기술 : 총 28개 분야 91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분야 (10개 분야 46개 기술) : LED 응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콘텐츠-SW 등 - 원천기술분야 (18개 분야 45개 기술) : 금속, 원자력, 우주, 디스플레이 등 	<input type="checkbox"/>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SW기술에 3D기술을 추가 - IT융합기술을 추가 - 디스플레이 기술에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을 추가 - 풍력지열에너지 기술을 추가

<개정이유> 미래 성장동력인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및 3D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산업을 육성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25.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25의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 10% ○ 일몰기한 : '10.12.31 ○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소음·진동방지 및 방음·방진시설 - 오수처리·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시설 등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26.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04의15)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해 투자시 투자 금액의 3%를 세액공제 ○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광업권·조광권을 직접취득하는 경우 - 광업권 등을 소유한 외국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내국인이 자원보유국에 설립한 외국자회사(100%출자)를 통해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출자 또는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 일몰기한 : '10.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3.12.31 ※외국회사의 10% 이상 지분 취득 요건 등 설정 (조특령 개정사항)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1.1.1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27.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25의4)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제도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 공제율 : 7% ○ 일몰기한 : '10.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의약품 품질제고 및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28.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91의4)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14% ○ 일몰기한 : '10.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SOC 투자 활성화 등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9. 기업 구조조정 지원특례 일몰연장(조특법 §34, §40, §45, §39, §46, §47의4)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일몰기한 : '10.12.31) ○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 부실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시 주식가액 법인세 면제 ○ 기업채무 상환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증여시 과세이연 등 ○ 부실기업 양도·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채무 인수시 채무면제익 과세이연 등 ○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이연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민간부문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자산양도·감자분·합병분·채무인수·변제, 주식양도·양수분부터 적용

30.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산입 유예(조특법 §104의22)

종 전	개 정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 유예 제도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대상 환입액 :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첫해 대손충당금 감소분 ○ 익금 유예 및 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기준 변경 첫해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 - '13.1.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 인식을 허용하여 동 기준 적용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로 일시 환입액이 발생함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해소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1. 제 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04의14)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제3 자 물류비용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전체 물류비의 50%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시, 위탁물류비 증가분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일몰기한 : '10.12.31 	<p><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2.12.31</p>

<개정이유> 전문물류기업 육성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2. 학교법인의 전액출자 법인이 동 학교법인에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조특법 §104의16.④)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동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학교법인이 직접 수익사업 운영시 법인세 부담이 없어지는 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려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부담을 해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33. 학교법인 수익용재산 대체취득시 법인세 과세이연 일몰연장(조특법 §104의16.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을 대체취득할 경우, 기존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3년거치 3년 분할과세)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학교법인이 보유한 저수익자산을 고수익자산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여 재정확충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 사립대학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06)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민자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하는 사립대학 시설(예 : 기숙사)과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 학교가 민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민자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일몰기한 : '10.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 '11.1.1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35.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조특법§94)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종업원 임대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 장애인노안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7% →10%) * 5인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개정이유> 직장여성의 고용안정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추가(조특법 §7)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대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등 34개 업종 ○ 감면율 : 5 ~ 30% 	<input type="checkbox"/> 감면 대상업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서비스기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본점 소재지</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업 종</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기업구분(%)</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소기업</th> <th style="text-align: center;">중기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수도권</td> <td style="text-align: center;">▪ 도·소매업, 의료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제조업 등 기타업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지식기반산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지방</td> <td style="text-align: center;">▪ 도·소매업, 의료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제조업 등 기타업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body> </table>	본점 소재지	업 종	기업구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 도·소매업, 의료업	10	-	▪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방	▪ 도·소매업, 의료업	10	5	▪ 제조업 등 기타업종	30	15	
본점 소재지			업 종	기업구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 도·소매업, 의료업	10	-																					
	▪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방	▪ 도·소매업, 의료업	10	5																					
	▪ 제조업 등 기타업종	30	15																					

<개정이유> 고령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지원

- 또한,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7.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일몰연장(조특법 §122의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 성실사업자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비차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 3년 평균 수입금액 대비 1.0배 초과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 일몰기한 : '10.12.31	○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 (좌 동)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11.1.1 이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8.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126의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발급 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당 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통신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11.1.1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9.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축소(조특법 §24)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3%(중소기업 7%) ○ 적용대상 -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설비, 공급망 관리시스템 설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등	<input type="checkbox"/>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지원대상 축소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 삭제

<개정이유> 지원목적이 달성된 범용화 시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40.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 일몰종료(조특법 §12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 대 상 - 신용카드·현금영수증·POS·전파식별시스템·통합전산시스템·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한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 학원 운영 사업자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 - 금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 ○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 상당 소득세액 공제 ○ 일몰시한 : '10.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종료

<개정이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가 보편화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리잡은 상황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분부터 적용

41.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종료(조특법 §91)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3년이상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 : 액면가액 3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이하 5% ○ 일몰기한 : '10.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2.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과세특례 축소(조특법 §87의5)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선박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 : 액면가액 3억원 이하분 5%, 3억원 초과분 14% ○ 일몰기한 : '10.12.31	○ 세율 : 액면가액 1억원 이하분 5%, 1억원 초과분 14% ○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일몰을 연장하되, 제도의 실효성에 비해 과도한 감면 축소

<적용시기> '11.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3.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종료(조특법 §16)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의 30% 한도) ○ 일몰기한 : '10.12.31까지 출자분	<input type="checkbox"/> 일몰종료

<개정이유> 소득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창투조합을 통한 주식 등 양도세 비과세와의 중복지원 고려

<적용시기> '11.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4.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일몰종료(조특법 §91의8)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 과세특례 :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상당액 비과세 ○ 일몰기한 : '10.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종료

<개정이유> 실제 적용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5.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조특법 §91의12)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율 : 투자금액 1억원까지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5% ○ 일몰기한 : '10.12.31까지 가입분('12.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input type="checkbox"/> 일몰종료

<개정이유> 외환위기 확산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외환시장 상황이 개선된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46. 고용유지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종료(조특법 §30의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어려움(다음중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액 10% 이상 감소 ·생산량 10%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1인당 임금이 감소할 것 ○ 공제내용 : (전년대비 1인당 평균 임금감소분 × 상시근로자수)의 50% 소득공제 ○ 일몰기한 : '10.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종료
<input type="checkbox"/>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내용 :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과 정기 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 공제한도 : 1,000만원 ○ 일몰기간 : '10.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종료

<개정이유> 경기하강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로써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각종 고용지원 세제를 신설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7.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 보완(조특법 §77⑧)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20% ~ 50%) <input type="checkbox"/>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 여부 판단시 취득일 -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취득시기 판단기준 보완 - (좌 동) -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자가 해당토지를 취득한 날

* 양도세 이월과세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개정이유>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의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8.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5년간 감면한도 설정(조특법 §13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input type="checkbox"/> 만기보유 채권 보상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input type="checkbox"/> 현금, 일반채권 보상 : 1년간 1억원	<input type="checkbox"/> 양도세 감면한도 보완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현금, 일반채권 보상 : 1년간 1억원, <u>5년간 3억원</u>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현금보상 유인 축소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도모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9.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매수하는 '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조특법 §77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20% ~ 50%) ○ 적용요건 :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 ○ 지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동일 사업지역내 최종 양도자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

<개정이유>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결정·경정분부터 적용

50. 종부세 비과세 주택건설용 토지 범위 확대(조특법 §104의19)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종부세 비과세 주택건설용 토지 범위 ○ 주택법상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사업계획승인 전 5년 이내) <신 설>	<input type="checkbox"/> 주택건설용 토지 추가 ○ (좌 등)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 시설투자, SOC투자 등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한 한시적 특수목적회사(SPC) (설립근거 : 법인세법 §51조의2①6호)

<개정이유> 주택법상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51. 면세금지금제도 일몰연장(조특법 §106의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일정 요건을 갖춘 금지금 공급 및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 도매업자·제련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 공급시 ○ 금세공업자·금융기관 등이 면세금지금 수입 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금지금 수입시 ○ 일몰기한 : '10.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1.12.31

<개정이유> 금거래소 도입('12.1월 예정) 전까지 1년간 일몰연장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52.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 동업자에 대한 세무신고내용 통보 의무화(조특법§100의2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발생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 ○ 동업기업은 세무신고* 후 동업자들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할 의무 없음 *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신고의무 	<input type="checkbox"/> 동업기업과세특례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업기업이 세무신고를 한 후, 동 내용을 동업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함

<개정이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3.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포기 요건 개선(조특영 §100의16)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포기시 제출서류 ○ 동업기업 적용·포기신청서 <신 설>	○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

<개정이유> 동업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포기되는 문제점 보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4.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3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FTA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 전환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전환후 사업을 위한 신자산으로 대체취득시 - 구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향후 FTA 체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피해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유도 지원

<적용시기> 2011.1.1일 이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55. 취약종목 운동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신설(조특법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취약종목 운동팀 법인세·종부세 세제지원</p> <p>< 지원대상 : 33개 종목* ></p> <p>-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지정된 종목으로서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종목(문화부와 협의)</p> <p>*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봅슬·스켈,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p> <p>< 창단시 인건비·운영비 법인세 지원 ></p> <p>① 지원방식 : 인건비·운영비의 7% 세액공제</p> <p>② 지원기간 : 창단후 3년간</p> <p>③ 인건비·운영비의 범위</p> <p>- (인건비) 팀소속 선수 및 감독·코치에 대한 연봉 및 포상금</p> <p>- (운영비) 팀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p> <p>< 운동팀 사용 체육시설용 토지 종부세 비과세 ></p> <p>① 지원대상토지 : 기준면적* 이내 체육시설 토지</p> <p>* (예시) 법인영 §92조의8①1호 [사업용 토지로 보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p> <p>② 지원요건 : 경기단체 등록, 종목의 선수정원 이상, 경기지도자 1인 이상 등</p> <p>< 사후관리 ></p> <p>- 창단 후 3년내 해당시 지원액 추징 등 요건 규정</p>

<개정이유> 취약종목 활성화를 통한 국위선양 및 국격향상

<적용시기> (법인세) '10.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창단하는 분부터 적용
(종부세) '10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56.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특법 §104의7②)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03.7.1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의제 * 근거 : 도시및환경정비법 §18 <input type="checkbox"/>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토자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13.12.31

<개정이유>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적용시기> 2011.1.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7. 택시 LPG부탄 유류세 지원체계 합리화(조특법 §111의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택시 LPG부탄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지원기간 : '08.5.1 ~ '11.4.30 - 유가보고금 지급 : 36원/ℓ - 면세 : 185원/ℓ* * 개별소비세 : 161원/ℓ, 교육세 : 24원/ℓ(개별소비세의15%)	<input type="checkbox"/> 택시 LPG 부탄 유류세 지원총액규모(221원/ℓ)를 동일하게 유지하되, <input type="checkbox"/>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인상* (36원/ℓ → 198원/ℓ)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부) <input type="checkbox"/> 유류세 면제단가를 인하조정(185원/ℓ → 23원/ℓ)

<개정이유> 유가보조금 및 유류세 면제 지급단가를 조정하여 전체 지원수준은 유지하되 지원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축소(조특법 §26)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임시투자세액공제 ○ 개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 적용대상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32개 업종	<input type="checkbox"/>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4퍼센트(수도권 밖의 투자 등에 대해서는 5퍼센트)로 축소

<개정이유> 단순보조금 성격의 지원제도를 축소하고, 고용창출형 투자 및 R&D 투자 지원 제도로 전환

<적용시기> '11.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이전가격 세제(정상가격 산출방법) 개선(국조법 §5, 국조령 §4·5)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거래방법 우선 적용 * 전통적 거래방법 :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 보완적으로 이익분할방법 및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p><input type="checkbox"/>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높을 것 등 <p><input type="checkbox"/> 비교가능성 분석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등 <p><input type="checkbox"/> 비교가능성 분석절차 규정 미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가격 산출 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분석절차, 고려요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전가격 과세 실무에서 통상 적용되는 절차 및 고려요소임 	<p><input type="checkbox"/> 적용 우선순위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 <p><input type="checkbox"/> 선택기준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특수관계거래의 구체적 상황간에 부합성이 높을 것 * 부합성 판단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 <p><input type="checkbox"/> 분석요소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략’ 추가 * 분석요소 구체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 <p><input type="checkbox"/> 분석절차 규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분석 당사자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 및 차이조정, 정상가격 범위결정 등 단계별 분석절차 보완 * 각 절차 구체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

<개정이유> 변화된 국제거래 현실에 맞게 이전가격 세제 개선 및 OECD 등 국제적 논의동향 반영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국제거래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강화(국조법 §12, 국조령 §22)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p>* (예)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p>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기준 없이 국세청 고시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과 관련한 중요자료,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 국내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 ○ 위반정도, 사유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

<개정이유> 이전가격 세제의 집행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현실화(3천만원: '95년 산정 금액)

* 과태료는 여타 법령에서 위반행위에 따라 5백만원 ~ 2억원까지 부과 중

<적용시기> '11.1.1 이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조세피난처 세제) 개선(국조법 §20)

종 전	개 정
<p>□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특정외국법인(자회사)을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할 경우</p> <p>○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p> <p>○ 실제배당시 또는 주식 등 양도시에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 조정</p> <p>* 다만 10년을 한도로 익금불산입</p>	<p>○ 10년 기간제한 삭제</p>

<개정이유> 실제배당시 익금불산입하는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기간제한 삭제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11.1.1 이후 배당 또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법]

1.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축소(개소법 §19의3)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음 유흥음식행위는 개별소비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숙박업의 경영자·한국음식점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등 ○ 주한국제연합군·미국군 주둔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에서 외국군인 등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 지) ○ (좌 등)

<개정이유> 과도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적용시기> '11.1.1 이후 유흥음식행위분부터 적용

2. 주한외교관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합리화(개소법 §16, §19의3, 교통세법 §14)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한외교관 등 물품의 개별소비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외국공관의 공용품 구입 ○ 주한외교관(가족)의 자가용품 구입 ○ 주한외국공관의 석유류 구입 ○ 주한외국공관 근무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 행위 <input type="checkbox"/>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 면제물품을 5년내 양도시 개별소비세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차량 석유류 구입으로 제한 ○ (폐 지)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기간 단축 : 5년 → 3년

<개정이유> 상호주의 원칙 및 국제적인 관례 등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제도 적용범위 확대(개소영 §19)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미납세반출* 대상</p> <p>* 제조장에서 제조장(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제조장(하치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개별소비세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물품 반출 ○ 개별소비세 보전이나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 - 승용자동차 하치장 반출 등 -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 등 	<p><input type="checkbox"/> 미납세반출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자 영업소 전시용 승용자동차 반출 추가 - 과세물품 제조장간 반출 추가

<개정이유> 제조자 영업소에 전시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판매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납세반출제도 적용

<적용시기> '11.1.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개별소비세 신고기한 보완(개소법 §9)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물품 : 매분기 다음달 25일 ○ 과세장소(경마장 등) : 매분기 다음달 25일 ○ 과세유흥장소 : 매분기 다음달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과세유흥장소 : 다음달 25일

<개정이유> 개별소비세의 분기별 신고·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별 신고·납부로 전환

<적용시기> '11.1.1 이후 유흥음식행위 분부터 적용

5.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개소법 §9의2, 령 §15)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 개별소비세를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 개별소비세를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가능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에 맞춤

<적용시기> '11.1.1 이후 분부터 적용

6.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특례세율 일몰연장(개소법 §1)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생연료유 개별소비세 과세 ○ 세율 : 90원/ℓ - '10.12.31까지는 66원/ℓ * 석유제품 외의 제품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 또는 노(爐)의 연료인 석유제품	- 일몰연장 : '12.12.31

<개정이유> 부생연료유는 등유의 열등대체재인 점을 감안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단,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

2. (주)세무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신고 후 30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이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경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 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였다.

▶ ×

3.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법 소정 가산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중소기업은 5천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4.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한다.

▶ ○

5.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지방세는 1천만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

6.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 ○

7. 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조사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과 심판조사관의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 ×

8. 자신의 매출·매입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 가공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다른 사람이 국세포탈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본세의 포탈이 없어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 ○

9.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와 총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된 것으로 본다.

▶ ○

[국세징수법]

1.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징수유예 할 경우 징수유예기간은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월까지 가능하나, 법소정의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 ○

2.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

3. 기압류 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 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만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 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각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이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 ○

[부가가치세법]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폐업의제에 해당하는 때에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인 자신이 비사업자인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에서 제외하고,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 ○

2. 의료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

3.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 ×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유방확대·유방축소술·지방흡인술·주름살제거술은 2011.7.1부터 과세한다.

▶ ○

5.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동물의 진료용역은 가축 및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에 대해서만 면세한다.

▶ ○

6. 교육용역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과세한다.

▶ ○

7.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 ×

8.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건당 200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

9. 미등록가산세는 사업시작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

10. 타인명의등록가산세는 사업시작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

1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

12. 비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 ○

13.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상당액(1천원 미만 절사)을 결정하여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예정신고기

한 내에 징수한다.

▶ ○

14.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

15. 사업자가 폐업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16.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여야 한다.

▶ ○

17.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1.7.1부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 ○

18.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 ○

19.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에는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건물·구축물,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이 해당된다.

▶ ○

[소득세]

1. 근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대학생이 받은 근로장학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대학생이 받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

2.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6%를 적용한다.

▶ ○

3.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법」 제 24조에 위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법」 제 24조에 위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

4.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 ○

5. 대학교수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연구용역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법」 제 24조에 위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

6.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 2인, 입양자 1인, 위탁아동 1인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금액은 500만원이다.

▶ ×

7. 거주자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 ○

8. 퇴직소득의 정률(기본)공제는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수령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퇴직소득의 45%를 적용한다.

▶ ×

9.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 ○

10.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종합과세된다.

▶ ○

11.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소정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과세한다.

▶ ○

12.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기준에 미달하는 자만 단순경비율대상자로 한정한다. 즉, 수입금

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

13.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 ○

14.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반기별 원천징수대상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한다.

▶ ×

15.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는 이월과세의 규정 적용을 제외한다.

▶ ○

16.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 ○

17. 2011.7.1이후 매매계약 분부터는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을 실지거래가액과 계약서상 거래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 ○

18. 거주자 흥길동씨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다만,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용은 6천만원과 2백만원이다.

구 분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양 도	1억	4천만원
취 득		2천만원

① 환산가액기준 양도차익 = 1억(양도가) - 5천(환산취득가) - 2천만원 x 3%(기타경비)
= 49,400,000원

②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용기준 양도차익 = 1억(양도가) - 6천(자본적지출) - 2백(양도비용)
= 38,000,000원

③ 양도차익 : MIN[49,400,000, 38,000,000] = 38,000,000원

[법인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손금불산입한다.

▶ ○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을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

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주)세무의 법인세법에 따른 제 5기와 제 6기의 세무조정은?

- (1) 제조기업 (주)세무는 제 5기 사업연도(2011.1.1.~2011.12.31) 중 \$200,000을 차입하였고, 차입시 환율은 \$1=1,300원이다.
(2) 제 5기말의 환율은 \$1=1,400원이다.
(3) 제 6기 사업연도에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상환시 환율은 \$1=1,500원이다.
(4) 환전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5) (주)세무는 기업회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답] 법인세법상 일반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가 선택사항이므로 세무조정이 없음

4. 건설자금이자 대상 = 특정차입금 이자(자본화강제) + 일반차입금 이자(자본화 선택)

① 특정차입금 이자 =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 - 일시예금으로 인한 수입이자 - 운영자금전용이자

② 일반차입금 이자 = 법소정 산식의 금액

5. 전화기(휴대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의 취득가액에 대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감가상각 시부인 없이 손금으로 인정한다.

▶ ○

6. K-IFRS를 적용받는 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 ○

7. K-IFRS도입으로 인해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 ○

8. 종전에는 합병·분할시 승계한 자산은 경과연수가 기준내용연수의 50%미만인 경우에도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2011년부터는 경과연수가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인 경우에만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

9. 장기할부 거래에 대해서는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 인도기준 또는 회수기준 적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장기할부거래를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을 통해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해 인도기준·회수기준을 모두 허용하는데 비해 K-IFRS는 예외 없이 인도기준만 허용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 ○

10. 중소기업에 대한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단기건설계약은 결산상 인식한 방법대로 진행기준 또는 인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을 통해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해 진행기준·인도기준을 모두 허용하는데 비해 K-IFRS는 예외 없이 진행기준만 허용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 ○

11.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 가운데 신고조정사항은?

- | | |
|---|---|
| <input type="radio"/>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 <input type="radio"/> ㉡ K-IFRS를 적용받지 않는 법인의 무형자산상각비 |
| <input type="radio"/> ㉢ 재고자산 평가차손 | <input type="radio"/> ㉣ 고정자산 평가차손 |
| <input type="radio"/> ㉤ 대손충당금 | <input type="radio"/> ㉥ 퇴직연금충당금 |
| <input type="radio"/> ㉦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할부거래 | <input type="radio"/> ㉧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건설계약 |
| <input type="radio"/> ㉨ 비상위험준비금 | |

[답] ㉠, ㉢, ㉤, ㉦, ㉨

12. 퇴직급여충당금은 상여금을 포함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손금산입하되, 총당금누적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임원과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25와 퇴직금전환금 계상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

13.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 ○

14. 상속세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때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중소기업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한다.

▶ ○

1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세액의 확정 신고는 하여야 한다.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 ×